

AI 네트워크 얼라이언스 운영규정(안)

제정 2023.08.16.

개정 2024.04.04.

개정 2025.11.03.

개정 2026.07.14.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AI 네트워크 얼라이언스” (이하 얼라이언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AI Network Alliance” 으로 표기한다. 약어로는 “AINA 및 AIN Alliance” 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얼라이언스는 회원사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AI 네트워크 및 오픈랜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생태계 활성화 등에서 선도국가 달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얼라이언스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 AI 네트워크 및 오픈랜 국가 비전 및 미래전략 수립, 정책제안
- AI 네트워크 및 오픈랜 기술동향 분석 및 국내외 표준화 지원
- AI 네트워크 및 오픈랜 국내외 수요자 요구사항 분석 및 시장진출 지원
- AI 네트워크 및 오픈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외 단체와 협력 및 홍보 활동
- 기타 얼라이언스의 목적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2장 조직구성 및 역할

제4조(기구) 얼라이언스는 총회, 의장단, 감사,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제5조(총회 구분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대표의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2.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
3. 제12조(감사 직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③ 제1항의 회의소집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최소 7일전까지 재적회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대리인,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대표의장에게 위임한 경우 출석에 갈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총회 의결사항)

- ① 총회는 얼라이언스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운영규정 제·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승인에 관한 사항
 4. 단체 해산 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의장단 또는 운영위원회가 내부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 ② 총회는 얼라이언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장단 또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총회 의결방법)

- ① 회원은 제27조(회원 권리) 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재적회원 의결권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의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대표의장이 의결한다.
-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본인에 관한 사항의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사업의 추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얼라이언스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경우

제8조(총회 회의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의장, 운영위원장, 감사 중에 2명 이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재적 회원 수 및 출석한 회원 수
 3. 의결사항
 4. 의사의 경과와 발언요지
- ② 총회 의사록은 사무국에 비치한다.

제9조(의장단 구성)

- ① 의장단은 공동의장으로 구성되며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운영위원장이 한다.
- ② 신규 의장단사는 의장단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받은 회원사로 한다.
- ③ 의장단사는 공동의장으로 지정할 각 1인을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한다.
- ④ 의장단사는 운영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할 각 1인을 추천한다.
- ⑤ 대표의장사는 의장단사의 추천을 받은 의장사로 한다.
- ⑥ 대표의장은 제5조(총회 구분 및 소집)에 정한 바에 따라 총회의 소집 및 회의진행을 주관한다.
- ⑦ 대표의장은 제6조(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주관한다.
- ⑧ 대표의장은 제10조(의장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주관한다.

제10조(의장단 의결사항)

- ① 의장단은 얼라이언스의 운영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전문위원회 및 특별작업반(Task Force)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활동범위 확대 및 프로모션에 관한 사항
 4. 임원 후보자 심의에 관한 사항
 5. 회원사 모집 확대 관한 사항
 6. 얼라이언스 활성화를 위해서 의장단사 과반이 찬성한 사항
- ② 의장단에서 의결한 사항은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시행을 결정한다.

제11조(의장단 의결방법)

- ① 의장단은 재적 의장단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의장단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장단을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및 사안이 경미하다고 의장단사 과반 이상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장단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결의할 수 있다.
- ③ 의장단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7조(총회 의결방법) 제3항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준수 한다.

제12조(감사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얼라이언스의 활동과 재산 상태를 감사
2. 얼라이언스의 활동과 재산 상태를 감사한 결과 부정, 불미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업무

3. 제2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업무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부운영위원장, 당연직 및 지명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의장단사 소속 추천자 각 1인, 전문위원회 위원장,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 ③ 지명직 위원은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승인받은 자로 한다.
- ④ 운영위원회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제6조(총회 의결사항) 제2항을 근거로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얼라이언스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집행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얼라이언스의 시행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총회에 상정할 의안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회원사의 가입, 제명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3. 임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활동계획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 제정, 개정, 폐기에 관한 사항
7. 전문위원회 및 특별작업반(Task Force)의 신설 및 해산, 운영에 관한 사항
8. 회비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
9. 사무국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10. 주요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5조(운영위원회 의결방법)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및 사안이 경미하다고 운영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결의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7조(총회 의결방법) 제3항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준수 한다.

제16조(자문위원회 구성)

- ① 자문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신설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 승인을 거쳐 선임한다.
- ③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소집 및 회의진행을 주관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공유한다.
- ④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⑤ 자문위원은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활동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 ⑥ 자문위원회 의견수렴 방법은 제15조 1항과 2항을 따른다.

제17조(전문위원회 구성)

- ① 전문위원회 및 **WG**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신설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장 및 **WG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 승인을 거쳐 선임한다.
- ③ 전문위원회, **WG**의 부위원장 선출 방법과 역할은 전문위원회 및 **WG**에서 정한다.
- ④ 전문위원은 회원사 소속 임직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⑤ 전문위원회 및 **WG**의 내부결정으로 초빙한 외부 전문가에게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인원 증감 현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⑥ 전문위원회는 집중적인 활동이 필요할 경우에 실무반(Study Group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8조(특별작업반 구성)

- ① 특별작업반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② 특별작업반장은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선임한다.
- ③ 특별작업반 부반장의 선출 방법과 역할은 전문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특별작업반의 활동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 ⑤ 작업위원은 회원사 소속 임직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⑥ 특별작업반 내부결정으로 초빙한 외부 전문가에게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인원 증감 현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사무국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제14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1. 회의개최 및 운영 및 지원
 2. 회원가입 및 탈회 관련 업무
 3. 회계 및 사무관리
 4. 홈페이지 운영 및 공식적인 대외 창구역할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부대업무 등
- ③ 얼라이언스는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운영에 필요한 실무자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얼라이언스는 사무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장 및 실무자의 인건비, 관리비 등 정상운영과 관련한 소요경비를 지급한다.
 - ⑤ 사무국의 복무규정, 여비규정, 인사규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국을 맡은 기관의 내부 규정을 참고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⑥ 사무국장은 운영위원장이 사무국으로 지정한 기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⑦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제반 실무를 총괄한다.

제3장 임 원

제20조(임원) 얼라이언스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복수의 공동의장
2. 감사 1인
3. 운영위원장 1인과 복수의 부운영위원장
4. 자문위원장 1인
5. 복수의 전문위원장 및 WG장

제21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써 선임하며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 ②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임원 후보자는 의장단의 후보자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④ 임원 후보자 추천 절차와 방식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임원의 직무)

- ① 대표의장은 얼라이언스 대표로서 총회를 진행하며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얼라이언스 활동을 총괄한다.
- ② 대표의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공동의장 중 1인이 대표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대표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임원의 임기는 기본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⑤ 대표의장 및 임원의 임기가 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총회 개최 시까지 임기를 연장하며 후임자가 공식적으로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이행한다.
- ⑥ 대표의장 및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사(법인, 단체)에서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기존 임원의 직무를 승계한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얼라이언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그 밖에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

제24조(임원의 해임)

- ①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해임 할 수 있으며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1. 운영규정이나 총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 2.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3.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경우
 - 4.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 5. 얼라이언스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③ 임원이 얼라이언스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4장 회 원

제25조(회원 구분) 회원은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제3조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장단사 및 일반회원사(법인·기관·단체)와 특별회원(개인)으로 구분한다.

제26조(회원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의장단사
 - 1. 국내외 영리법인, 기관 및 단체
 - 2.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재단 법인

3. 개별법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 중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탁·위임받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공공기관)
 4. 기타 얼라이언스 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관 및 단체
- ② 일반회원사
1. 국내외 영리법인, 기관 및 단체
 2.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재단 법인
 3. 개별법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 중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탁·위임받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공공기관)
 4. 기타 얼라이언스 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관 및 단체
- ③ 특별회원
1. AI 네트워크 및 오픈랜 연구개발과 건전한 생태계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문가
 2. 기타 얼라이언스 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

제27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 ① 의장단사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9조(의장단 구성) 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 ② 의장단사가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단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른다.
- ③ 일반회원사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기관·단체는 사무국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기관·단체가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고 제3조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
- ⑤ 특별회원은 제25조(회원 자격) 제3항의 기준에 준하는 자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⑥ 회원사가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회원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얼라이언스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얼라이언스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회원사인 법인·기관·단체가 해산한 경우
 4. 얼라이언스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5.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명을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⑧ 회원사는 얼라이언스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8조(회원 권리)

- ① 모든 회원은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얼라이언스의 활동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 ② 의장단사, 일반회원사, 특별회원은 전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 의해 임원으로 추천될 수 있다.
- ③ 총회 의결권은 회비를 납부한 의장단사와 일반회원사가 가진다.
- ④ 총회 의결권은 의장단사 및 일반회원사가 동일하게 한 표씩 행사한다.

제29조(회원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진다.

1. 얼라이언스 운영규정 준수 의무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3. 사업체의 명칭, 대표자, 사무소 또는 사업의 휴·폐업 등 중요 변경사항의 신고의무

제30조(회비 종류)

- ① 회비는 연회비, 특별회비(후원금, 분담금)로 구분한다.
- ② 의장단사, 회원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회비를 징수 한다.
 1. 연회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회원의 회비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③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5장 회계 및 사무관리

제31조(회계 및 사업연도) 회계연도와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운영재원)

- ① 얼라이언스의 운영 재원은 연회비, 특별회비(후원금, 분담금), 위탁·용역과제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 ② 얼라이언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 등은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제33조(회계 및 사무관리)

- ① 얼라이언스의 회계 및 사무관리는 사무국에서 처리하며 관리한다.

- ② 얼라이언스 회계는 연회비와 이월금으로 구성된 일반회계, 위탁·용역과제로 편성된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 ③ 얼라이언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년도로 이월하여 동일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재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얼라이언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규정의 효력) 본 규정은 얼라이언스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립년도의 회계 및 사업연도) 얼라이언스 창립년도의 회계 및 사업연도는 제30조(회계 및 사업연도)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립일로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최초 기구 및 임원) 얼라이언스 조직구성 및 임원 선임은 창립준비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정한 후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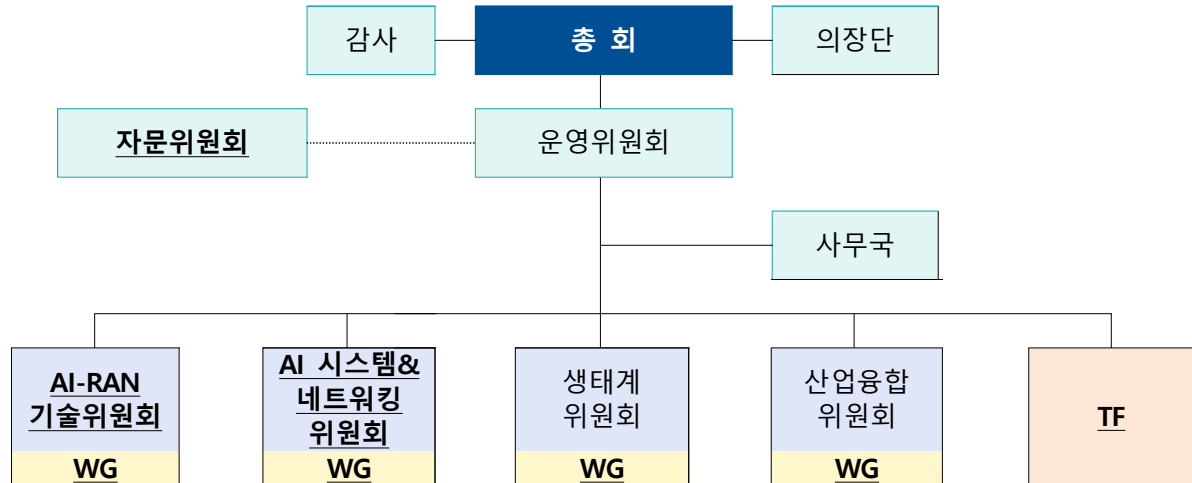
제4조(최초 사업 및 예산) 얼라이언스의 최초 사업과 예산은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정한 후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5조(최초 사무국) 얼라이언스 최초 사무국은 창립준비위원회에서 후보기관을 정한 후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끝.

<별표 1>

조직도 및 역할



구분	주요내용
의장단사	- 의장단은 AI네트워크 및 오픈랜 산업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 - 의장단은 회원사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정부 관계자와 수시 접촉 - 대표의장은 얼라이언스를 대표하고 내부 질서 유지 - 대표의장은 얼라이언스를 대표하여 성명 발표, 방문인사 접견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얼라이언스의 주요안건 협의 및 해결 중재 - 운영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유권 해석으로 갈등 해결 -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들의 의사 정리 - 운영위원장은 회원사 대립에 따른 선량한 중재자 역할 수행
감사	얼라이언스의 사업과 예산에 대한 감사 수행
자문위원회	AI 연합 생태계와의 협력 대응
전문위원회	얼라이언스의 연간 계획에 맞춰 각 전문분야별 실무 활동 추진
WG	각 전문위원회 전문분야의 복수의 세부 분야별 실무 활동 추진
Task Force	얼라이언스의 특정 임무를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활동 추진
사무국	얼라이언스의 사무와 행정을 담당하고 활동 지원

<별표 2>

연회비

구 분		의장단사	일반회원사
회원기준	자산총액 ¹⁾		
대기업(5조원 이상)		2,000만원	1,000만원
중견기업(5,000억 이상)		1,000만원	500만원
중소기업(5,000억 미만)		500만원	250만원
외국계기업 ²⁾		2,000만원	1,000만원
비영리기관 ³⁾		500만원	250만원

1) 공정거래위원회, 정부기관 등에서 지정한 대·중견·중소기업 분류기준 참조

2) 해외에 본사가 있는 기업(국내 지사 설립)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기타 비영리 기관 등